

의안번호	2219610
의 퇴 인	김위상 의원
회 답 일	2026. 9. 18.
추계번호	26A3178

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5조(기본계획의 수립)	○ 기본계획의 계획기간은 10년 이상으로 하며, 기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(제2항) － 7의2. 재생에너지 설비에서 발생하는 폐기물(태양광 패널·풍력 블레이드 등을 말한다), 대용량의 재생에너지를 저장·제어하는 에너지저장장치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·이용에 관한 지원 방안	의무규정
2	안 제10조(조성된 사업비의 사용)	○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9조에 따라 조성된 사업비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함 － 16. 재생에너지 설비·에너지저장장치 폐기물 재활용 및 순환이용 기술개발 지원 － 17. 재생에너지 설비·에너지저장장치 폐기물 재활용 및 순환이용 기업 지원	의무규정
3	안 제30조의5(재생에너지 설비 성능개선 등)	○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물 및 주요 부품의 이력관리, 재활용 및 순환이용, 입지 여건 및 환경성 등을 고려한 관리체계를 마련하여야 함(제1항) ○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후 재생에너지 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·교체하거나 설비의 안전성, 설비용량 등을 고도화하는 성능개선을 추진할 수 있음(제2항)	의무규정 재량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등 근거 규정
1	안 제5조(기본계획의 수립)	○ 미대상 － 현행 “신·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·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”에 개정안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추가 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

2	안 제10조(구성된 사업비의 사용)	○ 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3	안 제30조의5(재생에너지 설비 성능개선 등)	

2. 상세 사유

가. 구성된 사업비의 사용(안 제10조)

- 안 제10조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사업비의 용도에 “재생에너지 설비·에너지저장장치 폐기물 재활용 및 순환이용 기술개발 지원” 등이 추가되면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 - 개정안이 추가하는 사업비의 용도는 “재생에너지 설비·에너지저장장치 폐기물 재활용 및 순환이용 기술개발 지원”(제16호)과 “재생에너지 설비·에너지저장장치 폐기물 재활용 및 순환이용 기업 지원”(제17호)임
- 현재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재생에너지 설비 폐기물 재활용 및 순환이용 기술개발 지원과 관련하여 일부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, 개정안에 따라 추진될 신규 사업 및 현행 사업의 확대 정도를 추정하는데 한계가 있음
 - 개정안과 관련하여 현재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수행하고 사업으로는 “태양광 패널 재활용 기술개발사업”이 있음

[표 1] 태양광 패널 재활용 기술개발사업 현황

(단위: 백만원)

	2022	2023	2024	2025	2026
태양광 패널 재활용 기술 개발사업	—	—	—	5,000	8,000

자료: 기후에너지환경부

나. 재생에너지 설비 성능개선 등(안 제30조의5)

- 안 제30조의5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관리체계를 마련하고, 노후 설비에 대한 철거, 성능개선 등을 추진하면

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
- 안 제30조의5제1항의 관리체계는 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물 및 주요 부품의 이력관리, 재활용 및 순환이용, 입지 여건 및 환경성 등을 고려하여야 함

□ 다만, 개정안은 재생에너지 설비 관리체계의 대상, 노후 설비의 철거 및 성능개선 관련 사항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현시점에서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는데 한계가 있음

- 참고로, 재생에너지원별 설비 노후화(20년 이상 기준) 현황은 다음과 같음

[표 2] 재생에너지원별 설비 노후화 현황

(단위: 개소, MW)

구분	풍력		태양광			
	개소 수	발전용량	자가용*		사업용**	
			개소 수	발전용량	개소 수	발전용량
20년 미만	736	2,020.4	353,643	2,150.0	201,577	31,347.1
20년 이상	80	126.1	3,853	26.9	3,921	30.3
합 계	816	2,146.5	357,496	2,176.9	205,498	31,377.4

주: *태양광 설비의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는 보급사업을 통해 설치된 현황만을 반영한 것으로 발전사업자 등은 미포함됨

**2026.3.말 RPS 대상 설비확인 태양광 발전소 및 FIT 설비 누적 기준

자료: 기후에너지환경부

Ⅲ. 부대의견

□ 없음

I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추계세제총괄과	윤주철	김신애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윤주철	02-6788-4655	yjc@nabo.go.kr